

#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【주민조례 청구】

(의안번호 제2771호)

###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1. 17.

고성군의회의회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1. 1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5. 31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수정가결

#### 2. 청구대표자: 박 완 욱

##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#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고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56조의 2에 의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함에 따라,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주민조례 청구안을 발의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축사시설 등의 입지 제한 기준 정비(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)

##### 다. 참고사항

1) 조 례 명 : 「고성군계획 조례」 개정

2) 대 표 자 : 박완욱

3) 청구일자 : 2023. 8. 31.

4) 청구취지

-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완화를 요청함.
- 축사에 대한 도로이격거리 제한 완화 등

- 5) 서명기간 : 2023. 9. 4. ~ 12. 4.(3개월)
- 6)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: 2023. 11. 16.
- 7) 청구권자 수 요건미충족 보정안내 : 2023. 12. 8.
- 8) 주민조례 보정청구인 명부 제출 : 2023. 12. 20.
- 9)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23. 12. 26. ~ 2024. 1. 4.
  - 필요연서수 : 906명 이상(청구권자 총수 1/50 이상)
  - 유효서명인수 : 927명
- 10)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회부 : 2024. 1. 5.
- 11) 수리 심의 결정 : 2024. 1. 9.
- 12) 입법예고 : 생략
  - 「2023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」(p39 Q&A),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민 청구된 안건으로,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#### 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21조2)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으로,
  - 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의한 배출시설의 대지와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도로의 차선에 따라 세분화(4차선 이상 현행 100미터 유지 / 4차선 미만은 30미터로 완화)하고,
  - ② 기존 이격거리 내 소재한 축사 또는 이전하는 축사에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동의없이 증축·이전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도로와의 이격거리, 축사 증축·이전 또는 개축시의 조건 등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청구된 안건으로, 개정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
- 조례 개정에 따라 4차선 미만 도로와의 이격거리 완화 및 기존 축사 등의 증축·개축 또는 이전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세대주의 동의 조항 삭제 등에 따라 관내 거주 주민의 생활권 침해 및 향후 축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, 개정에 따른 실익 분석 및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6. 토 론: 없음

7. 심사결과: 2024. 5. 31. 수정가결

- 붙 임: 1. 수정안 제안서  
2. 「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수정안  
3. 수정안 대비표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「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수정 제안서

의안번호	제2771호 관련
------	-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	2024. 5. 31.
발 의 자	최두임 의원

## 1. 수정이유

○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함.

## 2. 수정내용

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지방도 중 4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100미터 (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, 지방도는 30미터)” 를 “지방도로부터 100미터” 로 하고 “기존 축사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” 을 “기존 축사등은 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현대화 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목에 따라” 로 한다. 가목 중 “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: 주민 동의없이 증축·개축 또는 이전가능” 을 “증축·이전: 증축·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의 5분의1 이상 동의를 득할 것” 로 한다.

나목 중 “가목 외의 경우: 증축·개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득할 것” 을 “개축: 주민 동의 없이 가능” 으로 한다.

## 「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지방도 중 4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100미터 (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, 지방도는 30미터)” 를 “지방도로부터 100미터” 로 하고 “기존 축사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” 을 “기존 축사등은 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현대화 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목에 따라” 로 한다. 가목 중 “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: 주민 동의없이 증축·개축 또는 이전가능” 을 “증축·이전: 증축·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의 5분의1 이상 동의를 득할 것” 로 한다. 나목 중 “가목 외의 경우: 증축·개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득할 것” 을 “개축: 주민 동의 없이 가능” 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조례안	수 정 안
<p>제21조의2(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축사등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의한 배출시설을 말한다)의 대지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 중 4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100미터(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, 지방도는 30미터)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 다만, 설치제한 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기존 축사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축·개축 또는 이전할 수 있다.</u></p> <p>가. <u>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: 주민 동의없이 증축·개축 또는 이전 가능</u></p> <p>나. <u>가목 외의 경우: 증축·개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득할 것</u></p>	<p>제21조의2(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) ① (생략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지방도로부터 100미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기존 축사등은 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목에 따라 -----.</p> <p>가. <u>증축·이전: 증축·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의 5분의1 이상 동의를 득할 것</u></p> <p>나. <u>개축: 주민 동의 없이 가능</u></p>